

# 19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

( 의안번호 제512호 )

# 심사보고서

1998. 11. 27.
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삼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. 1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1. 19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11. 26

상임위원회 상정·의제

## 2. 제안이유

- 하수도법 제5조의 2(하수도정비 기본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
  - 1999년도 예산승인을 득하기 앞서 19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함.

### 3. 주요 골자

- 지방채 발행계획
    - 19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: 21억7,200만원
    - 용자재원 : 환경개선 특별회계(환특용자)
    - 이율 : 년리 6.5%
    - 상환조건 : 5년거치 10년상환
    - 상환재원 : 원금 → 환경부(국고), 이자 → 고성군(양여금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건은 하수도법 제5조의 2(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)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발행키 위한 1999년도 예산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

-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고성군 고성을 송학리 1-1번지 일원 36,193㎡에 사업기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이며, 시설용량 1일 10,500M/T으로 총 사업비는 209억 7,300만원으로 써
- 금회에 지방채로 발행계획은 21억 7,200만원으로 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율과 상환조건, 상환재원 등 내용을 보면 원금은 환경부의 예산으로 국고에서 부담하고 이자재원은 고성군의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어 지방채의 상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
- 총 사업비 209억 7,300만원 중 예산의 부담비율을 보면 환특융자 70%, 지방비 30% 종도비 15%, 군비 15%로 99년도 군비부담액은 4억 6,545만원이며, 2000년 이후까지의 부담액은 22억 4,175만원으로 5년거치 10년간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비부담 예상추이 등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며
-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효과는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승인은 필요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지만 지방채는 긴급하고 필요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예산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
- 답 : 예산의 수지, 채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은 가능할 뿐 아니라 본건은 환특자금 및 양여금으로 상환함으로 문제없음.

## 6. 토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8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